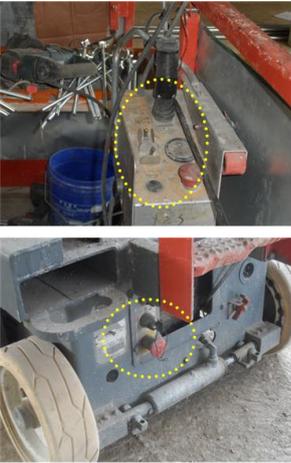


정기(기동점검) 점검 조치결과보고

[노들섬 특화공간조성사업 기계설비공사(장기-1차)]

- 점검일시 : 2018.10.08 (월)
- 조치결과
- ◆ 점검자 : 전용현

지적내용	점검사진	조치일자	조치사진
		조치내용	
<p>○ 건설기계 안전</p> <p>- 가스관로 부설작업은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 사항을 보완하기 바람.</p> <p>① 굴삭기 혹해지장치 설치</p> <p>② 인양로프로 PP로프 사용 금지</p> <p>③ 손상이 발생한 슬링벨트 사용 금지</p> <p>※건설안전기본지침 공통32(굴삭기)</p> <p>※건설안전기본지침 공통31(벨트슬링</p>		<p>2018.10.08</p> <p>-혹해지장치 설치 체결 완료</p> <p>-손상된 슬링벨트 폐기처분 및 교체 완료</p>	

<p>○ 건설기계 안전</p> <p>- 업무시설 작업장에서 스프링클러 설치 등의 작업에 사용중인 고소작업대는 협착 등의 재해 예방을 위하여 아래 사항을 보완하기 바람.</p> <p>① 근로자가 조종기 레버의 방향 및 버튼의 기능을 알 수 있도록 이물질 흡착 구간 청소 또는 별도의 표식 부착</p> <p>② 근로자 이탈 시 관계자외 타인이 조종하지 못하도록 시동키를 분리 보관 요망.</p> <p>※건설안전기본지침 공통 29(건설기계) ※건설안전기본지침 공통 36(고소작업대)</p>		<p>2018.10.10</p> <p>-운전조작 표시 패널 이물질 청소 및 표식부착 완료</p> <p>-근로자 이탈시 시동키 분리 후 이동토록 교육 및 작업종료시 키 제거</p>	
<p>○ 기타 안전관리</p> <p>- 가스관로 부설작업장에 외부인(가스**공사)이 보호구를 미착용한 상태로 출입하고 있으니, 재해예방을 위하여 출입구에서 안전모 등을 착용 후 진입할 수 있도록 관리 요망.</p>		<p>2018.10.08</p> <p>-안전모 미착용자가 가스배관 검사원으로 비상주 인원을 위한 안전모 비치하여 착용토록 조치함</p>	